

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2. 10.
제출자 : 이천시장

□ 제정이유

이천시의 역사와 고고·미술·민속자료를 수집·보관·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시키고 이에 관해 조사·연구·계몽·홍보하여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시립박물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개관 및 휴관일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
- 나. 관람 및 매표시간의 근거를 마련함. (안 제6조)
- 다. 관람료 및 이용료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)
- 라. 관람의 금지와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함 (안 제11조 및 제12조)
- 마. 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14조)

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의 역사와 고고·미술·민속자료를 수집·보관·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시키고 이에 관해 조사·연구·계몽·홍보하여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이천시립박물관(이하 "박물관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어린이"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.
2. "청소년"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·고등학생을 말한다.
3. "어른"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.
4. "군인"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·의무경찰을 말한다.
5. "단체"라 함은 관람을 목적으로 동시에 20인 이상 입장함을 말한다.

제3조(위치 및 범위) 박물관은 이천시 관고동418-3번지 일원에 두고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업무)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향토역사,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·연구
2. 고고·미술·공예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·연구
3. 소장품의 보관·보존처리 및 전시
4. 향토사의조사·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
5. 박물관에 관한 강연회, 강습회, 영사회, 연구회 등의 개최 및 사회교육
6.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배포
7.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5조(개관 및 휴관) ①박물관은 제2항에서 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물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
1. 1월 1일, 설날 및 추석날
2. 제1호의 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날
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6조(관람 및 매표시간)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

2.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

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.

③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.

제7조(관람료 및 이용료) ①시장은 박물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1의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.

②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박물관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③박물관시설 및 전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별표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관람료의 면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 할 수 있다.

1. 국빈 및 그 수행자.

2.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.

3.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.

4.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.

5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.

6. 국·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.

7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.

제9조(관람권) ①관람권은 어른·어린이·청소년 및 군인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.

②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박물관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, 관람권 검인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제10조(매표) ①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관람료를 계시하여야 한다.

③수표원은 관람자 입장시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 부분은 관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(제57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)

제11조(관람의 금지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.

- 1.술에 취한 자.
- 2.정신 이상자
- 3.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
- 4.위험물 및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자.
- 5.기타 공공질서, 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.

제12조(행위의 제한) ①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.
- 2.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
- 3.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
- 4.고성방가 또는 난무하는 행위
- 5.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

②제1항에서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3조(손해배상)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박물관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, 망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

제14조(박물관운영위원회) ①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위원은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계전문가, 문화계, 지역인사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⑤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⑥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⑦자료 및 유물등(이하 "자료등"이라 한다)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6명 이내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료감정평가소위원회(이하 "소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15조(위원회의 직무) 위원회는 박물관의 전시기획 및 설치, 연구활동, 유물관리,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, 시설물건립, 기타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을 한다.

제16조(회의) ①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2.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3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7조(간사) ①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박물관 담당을 간사로 둔다.

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한다.

제18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
2.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
3.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한때
4.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

제19조(자료감정평가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제14조제7항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하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

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사계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

③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

1. 구입대상 자료등에 대한 심사·평가 및 감정
2. 자료등의 구입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증·기탁자료에 대한 감정·평가
4.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

⑤소위원회에서 자료등의 감정·평가를 한 때에는 그 감정·평가결과를 기재한 감정

(제57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)

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

제20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이천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제21조(자료등의 구입) ①시장은 박물관에 소장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

②자료등의 구입은 각종 홍보매체(TV, 각종신문, 이천소식지, 유선방송등)를 통하여 공개구입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. 다만,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문화공보담당관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직위·성명	문화공보담당관 이 종 명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박물관담당 최종 악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태호 (644-2067)

【별표1】

이천시립 박물관 관람료

(단위 : 원)

구 分	입장자	기 준	입장료	비 고
개 인	어 른	1 회	500	
	어 련 이	"	200	
	군인 · 청소년	"	300	
단 체	어 른	"	400	
	어 련 이	"	100	
	군인 · 청소년	"	200	

※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함.

【별표 2】

이천시립박물관 이용료

(단위 : 원)

구 分	수량	금 액	비고
사 진 촬 영	1점	20,000	
사진원판이용	1매	10,000	